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464호 2016. 7. 21(목)

## 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16-155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사항 고시-----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6 / FAX 831-6012

# 사 천 시 공 보

제464호(2)

## 고 시

사천시 고시 제 2016 - 155호

#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6. 7. 21.

## 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6-1호(2016. 7. 11.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 -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 -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 - 어선의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 - 경남 사천시 노룡동 975-3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  - 승인번호 : 제2016-3호(2016. 7. 15.)
  - 공사기간 : 2016. 7. 15. ~ 2016. 10. 10.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16. 7. 15.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  - 점용·사용 신고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 -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